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3627
-----------	------

2026년 4월 22일
교육 위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4월 6일, 최재란 의원
2. 회부일자 : 2026년 4월 7일
3. 상정일자 :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4월 22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재란 의원)

1. 제안이유

- AI·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비판적 사고력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AI 기술의 일상화로 정보를 단순히 습득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비판적으로 읽고 판단하는 역량이 미래 핵심 능력으로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의 읽기 역량 및 디지털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고, 학교도서관이 단순 자료 보관 공간을 넘어 AI 시대 교수·학습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자료 등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교육감 등 학교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실적 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바. 학교도서관 운영 기준, 시설·장서 관리 및 지역사회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9조).
- 아.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자.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 협력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차.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및 기관,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6년 4월 6일 최재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627호로 발의되어 2026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조례안은 AI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의 ‘읽기 역량’ 및 ‘디지털 문해력’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 등에 근거한 체계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서울 학생들의 지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음.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1) 인공지능(AI)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디지털 기기 활용의 일상화로 정보의 양이 폭증함에 따라,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읽기 역량’ 과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챗GPT 등 생성형 AI의 확산은 다양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콘텐츠, 검증되지 않은 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한계 또한 존재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학생들이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경우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거나 비판적 사고 없이 결과만을 신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교육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교육환경 변화는 학생들이 단편적인 정보 소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써 인공지능 시대 적합한 읽기 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 역량으로서 체계적인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읽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임.

2) 학교도서관의 기능 확대 및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

- 1999년과 2002년 국제도서관연맹(IFLA)과 유네스코(UNESCO)는 「학교도서관 선언(School Library Manifesto)」과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School Library Guidelines)」에서는 학교도서관을 “현대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 하는 장소로 규정한 바 있음.
- 상기 두 선언은 학교도서관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활동과 평생학습 능력 신장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기

관심을 국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학교도서관의 역할이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 이상 의무 편성, 사서교사 배치 확대 및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다양한 정책¹⁾이 추진되었음.
-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학교도서관은 단순한 도서 대출 공간을 넘어 디지털 자료 활용, 정보 탐색 교육 및 교과 연계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학습 공간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재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3)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 2025년 기준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대부분의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고²⁾, 학생 1인당 장서 보유 숫자가 지난 3년간 늘고 있음에도 1인당 대출자료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등 학교도서관 정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는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³⁾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장서 규모 대비 도서관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낮은 수준임을 시사하며, 물적 인프라의 확충만으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확

1) 교육부(2024.3), 「제4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24~2028)」 참조.

2) 2025년 서울교육통계 및 교육통계서비스 기준,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는 총 1,373(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포함)개교로 이 중 학교도서관이 있는 학교는 1,317개로 전체의 95.9%임. 다만, 지역 재개발과 노후시설 개축 등을 이유로 휴교 상태인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음.

3) 한국교육신문, 2026.2.6., '사서교사 배치·양성체계 개선 시급'- "AI 시대일수록 학생들의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 확대와 양성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집중 제기"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6641>

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1] 학교도서관 자료 운영 현황4)

구분	내용
보유도서 현황(정보공시 기준) ※공시전년도 실적	학생 1인당 학교장서 수 ※ 33.2권(2023년) - 33.9권(2024년) - 35.01권(2025년)
이용 현황(정보공시 기준) ※공시전년도 실적	1인당 대출자료 수 ※ 15.09권(2023년) - 14.68권(2024년) - 14.51권(2025년)

[표-2] 최근 5년간(2021~2025년) 서울시 내 학교도서관 주요 통계5)

(단위 : 관, 권,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학교도서관 수	1,301	1,307	1,307	1,304	1,305
1관당 장서 수	19,881	19,853	19,467	18,079	17,743
1관당 사서교사 수	0.2	0.19	0.21	0.21	0.21
1관당 사서직원 수	0.85	0.67	0.64	0.63	0.66
1관당 방문자 수	869	4,019	5,792	5,643	5,317

- 또한 서울시 내 학교도서관의 1관당 방문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3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같은 기간 사서교사·사서직원 수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이용자의 접근성과 서비스 질을 확보할 인적 기반 자체가 취약한 구조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지표들은 학교도서관 정책이 물적 투자 중심의 양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4) 2026학년도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2p 참조

5)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statistics/school/main>) [검색일 2026-04-07]

즉,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보는 공간을 넘어, AI 시대의 복합적인 정보 매체를 선별하여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을 가진다 할 것임.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서울시 내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독서문화 정착, 학생의 학습 능력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정보습득 능력 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내용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디지털 기반 콘텐츠 개발, 권장도서 선정 등 구체적 사업과 학교도서관 운영 기준 및 운영위원회 설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안 제10조는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 지원 및 자원봉사자 활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 범위에 대해 안 제12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 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2) 조례의 목적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검토 (제1조~제3조)

-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규정으로서 「독서문화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학교도서관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독서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 및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조례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요 용어 역시 상위법을 인용하도록 정의함으로써 자치법규로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는 책무규정으로서 제1항과 제2항은 교육감에게 학교도서관의 시설·환경 개선, 자료 확충, 전문인력 배치 등 인적·물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한 디지털 문해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 독서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 제3항은 학교장에게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독서활동 여건을 조성할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안 제3조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교육감과 학교장 간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상호 연계된 책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AI 기술 확산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의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는 매년 교육감이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함) 을 매년 수립하고 그 추진 실적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선 안 제5조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교도서관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제1항⁶⁾)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5조제2항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사항을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련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내용상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안 제5조제3항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4)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검토(제7조)

- 안 제7조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서 등 독서자료 확보,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각호에 독서문화

6) 제9조(시·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범위를 규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안 제7조 각호에 열거된 내용은 학생의 독서 활동을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확장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과 연계 독서교육 지원을 명시한 것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학생의 읽기 역량과 디지털 문해력 함양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또한 독서 동아리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문화 행사 등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사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독서교육을 지역사회와 연계된 문화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안 제7조는 독서문화의 지속적인 확산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7조각호의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행정부담이 증가될 수 있어 기본적 방향 및 지원근거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세부 사업은 정책 계획을 통해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행정관리담당관-4618, 2026. 4. 13.).
 - 그러나 안 제7조는 앞선 시행계획에 포함된 독서문화 진흥 사업(안 제5조제2항제4호)의 범주를 규정한 것으로, 이미 교육청의 재량권을 인정해 제시된 범주에서 정책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편의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조례의 법규성과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더욱이 세부 사업은 정책 계획을 통해 운영한다는 의견 역시 동 조례안의 취지와 달리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질될 여지를 제공하여 정책의 일관성 역시 담보할 수 없는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 유형을 명시하는 것은 행정부담이 아닌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학생 및 시민들에게 독서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된 의견은 타당성이 약한 것으로 사료됨.

5)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검토(제8조)

○ 안 제8조는 학교장에게 「학교도서관법」 제3조7)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식 정보 제공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의 기반이 되는 교육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시설·설비 확충, 장서의 체계적 수집·관리, 디지털 자료 확충 및 사서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안 제8조제3항은 학교장에게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고, 교육감은 개방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안 제8조는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원칙적으로 규정하며 학교도서관을 단순한 자료 보관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독서활동 및 정보 활용 학습을 지원하는 공공 교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장서 관리와 함께 디지털 자료 확충을 명시한 것은 최근 인공지

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능 및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안 제8조는 상위법령⁸⁾을 근거로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검토(안 제9조)

- 안 제9조는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자료의 수집·폐기, 행사 및 활동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조문은 「학교도서관법」 제10조⁹⁾를 반영한 조문으로서, 학교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한 것인바,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8) 「학교도서관법」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노인·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9)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 지원에 관한 검토(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자원봉사자가 전문 인력의 고유 업무를 대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는 학교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부족한 인력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문 인력 중심 운영 원칙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보조적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사서교사 등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업무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되며, 학교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규정으로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8)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검토(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장 방문 및 운영 컨설팅 지원, 학교도서관 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사서교사 미배치 학교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도서관지원센터는 「학교도서관법」 제2조제3호¹⁰⁾ 및 제14조제2항¹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행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안 제11조는 사서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점에서 교육여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에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전담 조직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목적 범위 내에서 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인바,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9)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검토(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독서문화 진흥 및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대학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학교도서관이 단일 기관 중심의 운영을 넘어 지역사회 및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된 교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10) 동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이하 인문교육 조례)」와 독서 및 인문학 교육의 범주가 중복되어, 별도 조례 제정 시 행정력 분산 및 학교 현장의 혼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음. (행정관리담당관-4618, 2026. 4. 13.)

- 그러나 안 제4조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 조례안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내용상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조례가 배제되지 않고 그 조례에 따라 시책 운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또한, 동 조례안은 독서 ‘교육’ 및 인문학 ‘교육’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학생의 기초 ‘읽기 역량’ 과 ‘디지털 문해력’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및 운영 체계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즉, 인문교육 조례가 인문학적 가치와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적 가치’ 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본 조례안은 이를 실현하는 핵심 공간인 학교도서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디지털 독서 환경’ 을 조성하려는 ‘체계적 지원’ 에 그 핵심이 있는바, 두 조례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¹²⁾ 및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지침¹³⁾에서 학교장이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에 있어 학교기본운영비 100분의 1이상을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3% 이상을 자료구입비로 편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실질적인 규정을 신설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음.
-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의 의견 제출은 다양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이며 교육청의 의견 역시 동일한 절차로서 그 자체로는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존 조례안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단순한 의견제시의

12)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 4p, 학교도서관 인프라 성장

13)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77p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 예산 반영 권장사항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이는 조례안의 내용적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수정의 범위와 예산 수반, 그리고 학교 현장의 운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바, 별도 입법 절차를 통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 생활화를 촉진하고,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반으로 학생의 지적·정서적 성장과 지속적인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이 독서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 자료 확충 및 관리,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 등(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 전문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을 위한 독서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독서교

육 및 학교도서관 활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독서활동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5.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현황 및 학생의 독서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학교급별·발달단계별 권장도서 선정 및 안내
3.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5. 교원 및 사서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6. 독서 동아리 등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독서 활동 지원
7. 공공도서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독서 축제, 독서 캠페인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행사
8. 그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학교도서관 운영) ①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지식 정보 제공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 시설·설비의 확충 및 개선
2. 장서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디지털 자료 확충
3. 사서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학교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③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은 개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자료의 수집·폐기, 행사 및 활동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서교사 등 및 자원봉사활동) ① 교육감은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자는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의 고유업무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조적인 역할에만 한한다.

제11조(학교도서관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도서관 현장 방문 및 운영 컨설팅 지원
2. 학교도서관 관계자 간 네트워크 운영 및 지역 간 교류·협력
3. 사서교사·사서 미배치 학교에 대한 도서관 운영 및 독서활동 지원
4. 우수 독서교육 사례 발굴·확산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문화 진흥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학교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대학 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